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2019.7.18. 10시</b>	<b>배포</b>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80)	<b>담 당 자</b>	장 원 석 사무관 (02-2100-2682)	
	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장 박 광 배(02-3219-2302)		김 은 정 검사 (02-3219-2331)	
	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 김 충 우(02-3145-5550)		황 진 하 팀장 (02-3145-5552)	

## 제 목 :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

- 7.17.(수),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
  -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,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
-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(첨부)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
  - ⇒ 압수수색,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,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
- 금감원은 7.18.(목)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「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\*」 출범식을 개최
  - \*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, 변호사·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

### < 주요경과 >

- ① (운영방안 마련) 금융위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보고 (4.1.)
- ② (조사업무규정 개정) 금융위는 조사·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 차단 의무 신설 등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개정 (5.3.)
- ③ (집무규칙 제정) 금감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「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」 제정 (6.26.)
- ④ (특별사법경찰 추천) 금융위원장은 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·금감원 직원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추천 (7.3.)
- ⑤ (예산승인) 금융위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 (7.11.)

**1. 조직 및 담당업무**

- (조직) 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
  -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·운영
- (담당업무)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-Track\*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
  - \* 긴급·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(금융위원회 부위원장)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('13년 이후 총 93건)
  - ※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별사법경찰(6명)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 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

**2. 국민 인권침해 방지방안**

- (검사 지휘)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
- (교육 지원)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이수('19.5~6월)

**3. 증권선물위원회-검찰청(법무부) 협조방안**

-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 통보
-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 등 검토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